

CONSUMER CONNECTION

특별 부록

A-Z 신용카드 안내서

2007년 7월

미국 전체의 신용카드 부채가 이미 \$8000 억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2007년에 4 가지 주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금액이 \$1.7 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가구들은 이미 평균 \$9,000 가 넘는 신용카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의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유자 중 45 퍼센트가 계속 최소 금액(미지불 잔액의 2-4 퍼센트)만을 지불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수수료와 부과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미지불 잔액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는 약 13 년에서 30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든, 신용카드 부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든, 신용카드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Consumer Connection 의 A-Z 신용카드 안내서는 신용카드 시스템, 신용카드를 오퍼하는 방법,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다른 기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

Annual Credit Report – 연례 신용 보고서: 연방법에 의하면 3 개의 전국적인 신용 평가 기관(Equifax, TransUnion, Experian)은 각각 12 개월에 한 번씩 신용 보고서 사본 1 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최소한 매년 한 번씩 각 평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부정확한 계좌 정보, 폐기해야 할 정보와 신원 도난의 징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 제공 기관마다 보고하는 신용 평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평가 기관의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평가 기관의 보고서와 최대한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례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온라인 제공처는 AnnualCreditReport.com 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신용 감시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무료” 신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사기성 웹사이트에 주의하십시오.

무료 신용 보고서는 무료 전화 (877) 322-8228 로 전화하거나 Annual Credit Report Request Service(연례 신용 보고서 신청 서비스, 주소: P.O. Box 105281, Atlanta, GA 30348-5281)로 신청서를 보내어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nnualCreditReport.com 에서 연례 신용 보고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각 평가 기관으로부터 4 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신청하면 일년 내내 신용을 무료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Annual Fee – 연회비: 연회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단지 신용카드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1년에 한 번 신용카드 계좌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모든 신용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보상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회비가 보상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특히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25 퍼센트의 보상 카드 사용자에 속하는 경우).

Annual Percentage Rate (APR) – 연간 이자율: 연간 이자율이란 신용카드 계좌에 미지불 잔액이 남아있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신용카드의 미지불 잔액을 이체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APR에는 연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예를 들면, 18 퍼센트 APR). APR은 모든 종류의 신용(신용카드, 주택 융자, 자동차 융자 등)을 제공할 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할 때는 APR을 사용하여 여러 기관의 신용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Finance Charge, Outstanding Balance, 및 Solicitation** 참조)

APR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동 이자율은 우대 금리 또는 재무부 증권 금리의 변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바뀝니다. 고정 이자율은 변동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 자주 변동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고정 이자율을 인상하려면 사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신용카드에 여러 가지 APR을 적용할 수도 있고(예를 들면, 현금 서비스와 잔액 이체에 다른 이자율을 적용), 미지불 잔액의 금액에 따라 다른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 APR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Fees 및 Universal Default** 참조)

B

Balance Transfer – 잔액 이체: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다른 신용 제공 기관에 남아있는 잔액을 발급 기관의 신용카드 계좌로 이체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이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체 잔액에 대해 낮은 초기 APR을 제공하고 **잔액 이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초기 APR은 정상 APR로 환원됩니다. (**Cash Advance 및 Convenience Check** 참조)

Balance Transfer Fee – 잔액 이체 수수료: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다른 신용 제공 기관으로부터 잔액을 이체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Bankruptcy – 파산: 소비자 파산에는 보통 대부분의 소비자 자산을 매각하는 것(챕터 7 파산이라고 함)과 소비자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것(챕터 13 파산이라고 함) 등이 포함됩니다. 두 경우 모두 파산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면 소비자는 대부분의 부채를 상환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2005년에 파산법이 개정되어 소비자 부채가 있는 개인이 일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 챕터 7에 의한 면제가 금지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 소비자 부채가 대부분인 개인이 챕터 7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개인의 소득이 새

파산법에 의해 산출된 특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챗터 13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챗터 13을 신청한 개인은 파산법에 정의된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여 그러한 부채를 최대 5년 간 상환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정부가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용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은 보통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에 채무 면제 후 10년 동안 기록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6년 동안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챗터 7에 의해 부채가 면제된 후 신용 제공 오퍼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Billing Error – 청구 오류: 신용카드 명세서에 사용 또는 승인하지 않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했으나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달되었거나 한 달이나 늦게 도착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이 발생한 금액의 지불을 보류할 권리가 있으나, 적용되는 규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이 기재된 첫 명세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통지서를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이의 제기 통지서는 발급 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www.dca.ca.gov/legal/cr_8.pdf에 게시된 소비자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법률 안내서 CR 8, 신용카드 청구 오류 정정 방법(How to Correct a Credit Card Billing Error)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또한 www.dca.ca.gov/legal/cr_7.pdf에 게시된 법률 안내서 CR 7, 신용카드에 대한 지불 보류 방법(How to Withhold Payment on a Credit Card), 그리고 http://ag.ca.gov/consumers/general/credit_card_chargeback_rights.php에 게시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환불권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C

Cancellation of Recurring Charges – 반복 부과 취소: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가입하고 월회비를 신용카드에 부과하도록 승인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헬스클럽은 3개월이 지나도 회원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회원 가입을 취소했으나 헬스클럽은 월회비를 계속 신용카드에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클럽과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헬스클럽이 가입자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취소했다고 두 곳에 모두 설명하십시오. 헬스클럽에는 여러분의 계좌에 회비를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는 이러한 금액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부과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전화나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은 나중에 서신을 보내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과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서신을 보내어 각 부과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부과 금액이 표시된 명세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Billing Error** 참조)

헬스클럽이나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http://ag.ca.gov/consumers>)에 신고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해당 지역의 Better Business Bureau (www.bbb.org)에 신고하면 다른 소비자들이 그 헬스클럽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ash Advance –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TM 이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현금 서비스”)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을 비싸게 빌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인출 금액의 3 퍼센트 이상을 거래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고, 보통 물품 구입 시보다 더 높은 APR 을 부과합니다. (Balance Transfer 및 Convenience Check 참조)

Cash Advance Fee – 현금 서비스 수수료: 현금 서비스 수수료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Fees 참조)

Collector/Debt Collector/Debt Collection Agency – 수금 대행 회사: 신용 제공 기관은 소비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불을 청구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수금 대행 회사에 의뢰하여 부채를 회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용 제공 기관과 수금 대행 회사는 공정한 행동규범을 규정한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금 대행 회사는 불경스럽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불법적인 위협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채무자인 소비자에게 수금 대행 회사의 연락을 차단하고, 부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금 대행 회사가 연락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리와 같은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dca.ca.gov/legal/dc_1.pdf에 게시된 소비자 업무국의 법률 안내서 DC 1, 신용 제공 기관 또는 수금 대행 회사로부터 지불 청구를 받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What To Do If You Receive A Demand For Payment From a Creditor or Debt Collection Agency), 그리고 www.dca.ca.gov/legal/dc_2.pdf에 게시된 DC 2, 공정한 부채 회수 관행에 대한 법률 요약(Summary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Statutes)을 참조하십시오.

Complaints Against Credit Card Issuers –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대한 불만: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는 은행, 금융회사, 신용조합, 저축대부조합, 소매업자 등이 있습니다. 월 명세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발견되면 즉시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Billing Error 참조) 그러한 금액이 가입자가 모르는 새로운 수수료, 거래 조건, 또는 다른 상황에 의해 부과된 것이라면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수수료에 대해 적절하게 통지한 경우에는 면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청구 오류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수수료나 거래 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신용카드 발급 기관의 종류에 따라)의 규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금융기관 관리부(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는 담당 규제 기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발급 기관 데이터베이스(www.dfi.ca.gov/consume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에서도 광범위한 분쟁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소비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http://ag.ca.gov/consumers/>를 방문하십시오.

연방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회원인 주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Division of Consumer and Community Affairs
Mail Stop 801
Washington, DC 20551
(202) 452-3693 www.federalreserve.gov/consumers.htm

이름에 “national(내셔널)” 또는 “N.A.”가 붙은 국법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

Comptroller of the Currency
(통화감독원)
Customer Assistance Group
1301 McKinney Street, Suite 3450
Houston, TX 77010
(800) 613-6743 www.occ.treas.gov

연방준비제도 회원이 아닌 주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Consumer Response Center
2345 Grand Boulevard, Suite 100
Kansas City, MO 64108
(877) 275-3342 (무료) www.fdic.gov
이메일: Consumeralerts@fdic.gov

연방저축대부조합과 연방저축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저축은행감독청)
West Region Consumer Affairs
P.O. Box 7165
San Francisco, CA 94120
(650) 746-7000 www.ots.treas.gov

연방신용조합과 관련된 신용카드: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미국신용조합관리국)
Region V Tempe
1230 W. Washington Street, Suite 301
Tempe, AZ 85281
(602) 302-6000 www.ncua.gov
이메일: region5@ncua.gov

금융회사 또는 소매점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딜러, 주택용자회사, 신용평가기관과 관련된 문제: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
Consumer Response Center
6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80
(877) 382-4357 (무료) www.ftc.gov

Convenience Check(s) – 편의 수표: 편의 수표란 신용카드 계좌와 연결된 특별한 수표를 말합니다. 편의 수표는 보통 3 매가 한 세트로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명세서와 함께 배달됩니다. 편의 수표는 신용 한도까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잔액을 이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수수료(수표 금액의 5 퍼센트 이하)와 이자율(때로는 20 퍼센트 이상)이 높습니다. 편의 수표를 사용하기 전에 작은 글자로 인쇄된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Balance Transfer** 및 **Cash Advance** 참조)

Credit Bureau 또는 Credit Reporting Agency – 신용 평가 기관: 전국적인 신용 평가 기관에는 Equifax (www.equifax.com), TransUnion (www.transunion.com), Experian (www.experian.com)의 3 개가 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소비자의 신용 거래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 판매합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신용 보고서**와 **신용 점수**를 신용카드 발급 기관, 은행, 신용조합, 주택 용자 기관, 자동차 용자 기관, 보험회사, 건물 소유주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신용 제공 기관에 판매합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위에 언급된 신용 제공 기관으로부터 신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또한 소송, 판결, 세금 선취특권, 파산 신청과 같은 공공 기록 정보도 수집합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용 제공 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소비자 리스트도 판매합니다. 신용 제공 기관과 보험회사는 이러한 리스트를 사용하여 “사전 승인된” 신용 또는 보험 오퍼를 발송합니다. 소비자는 무료 전화 (888) OPTOUT 또는 (888) 567-8688 로 연락하거나 www.optoutprescreen.com 을 방문하여 이러한 오퍼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Prescreening 참조)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ftc.gov/bcp/online/edcams/credit/coninfo_reports.htm 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Credit Reports(신용 보고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Credit Counselor/Debt Negotiator/Credit Repair – 신용 상담 기관/부채 협상 기관/신용 복구: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유능한 신용 상담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신용 상담 기관을 찾으려면 조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해당 지역의 Better Business Bureau(www.bbb.org)에 이러한 기관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미국신용상담재단(NFCC)의 웹사이트 www.nfcc.org 를 방문하여 가까이 있는 소비자 신용 상담 서비스를 찾아보십시오. www.dca.ca.gov/legal/dc_1.pdf에 게시된 소비자 업무부의 법률 안내서 DC 1, 신용 제공 기관 또는 수금 대행 회사로부터 지불 청구를 받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읽어보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인부(Department of Corporations, DOC)는 부채 관리 계획 또는 부채 청산 계획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신용 상담 기관들을 규제합니다. (**Debt Management Plan** 참조) 이러한 기관들을 청구서 지불 업체 또는 프로레이터(prorater)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OC 웹사이트 www.corp.ca.gov를 참조하십시오.

신용 복구 기관들은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신용, 용자, 또는 모기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용 보고서**를 정정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기관의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FTC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러한 회사들은 소비자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은 후에 신용 보고서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tc.gov/bcp/online/edcams/credit/coninfo_debt.htm 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In Debt(부채)”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비영리 교육 및 옹호 단체인 Consumer Action 의 웹사이트 www.consumer-action.org에는 부채와 신용 복구에 대한 간행물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Credit Limit – 신용 한도: 신용 한도란 신용카드 발급 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redit Limit Increase Fee – 신용 한도 인상 수수료: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신용 한도 인상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은 보통 신용 한도 인상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우량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ees** 를 참조하십시오.

Credit Report – 신용 보고서: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는 소비자의 이름과 이전 이름, 현재 및 이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고용 기록, 소비자가 당사자로 기명된 소송, 소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소비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선취특권), 파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제공 기관 리스트의 형태로 작성된 신용 거래 기록, 계좌의 종류(예를 들면, 신용카드, 자동차 용자 또는 주택 용자), 현재 잔액, 지난 2-3 년 간의 지불 기록 및 기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의 계좌가 수금 대행 기관에 의뢰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도 포함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보통 7 년 이상 보고되지 않으나, 파산은 10 년 동안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과 다른 신용 제공 기관들은 신용 보고서(신용 점수 포함)에 의존하여 소비자의 신용이 우량한 정도와 신용 제공 조건을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고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임대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의 신용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의 주요 **신용 평가 기관**이 발급한 각 신용 보고서에는 동일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를 검토 및 모니터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평가 기관에 알리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Annual Credit Report** 참조)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로 인해 신용이 거부되었거나, 실직한 사람이 60 일 이내에 직장을 구할 계획이거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또는 신용 도용을 당했거나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용이 거부되었거나 신용 도용을 당했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에는 특히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무료로 신용 보고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서 당 \$8 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 보고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tc.gov/bcp/conline/edcams/credit/coninfo_reports.htm 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Credit Reports(신용 보고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Credit Score – 신용 점수: 신용 점수란 신용 제공 기관이 신용 제공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 신용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용 점수는 신용 거래 기록을 다른 소비자들의 기록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는 신용 점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청구서 지불 기록, 소비자가 개설한 계좌의 숫자와 종류, 지불 연체, 수금 조치, 미지불 부채, 계좌 개설 기간과 같은 소비자의 신용 기록에 관한 정보를 신용 신청서와 신용 보고서로부터 수집합니다. 신용 제공 기관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비슷한 계층의 다른 소비자들의 신용 거래 기록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 평점 시스템을 사용하여 누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 요소에 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점수의 합계(신용 점수)는 소비자의 신용도, 즉 융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 점수에는 FICO 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 다른 신용 평점 시스템도 있습니다. FICO 점수는 300 점과 850 점 사이에서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FICO 에 의하면 약 45 퍼센트의 소비자가 700-799 점 사이의 점수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600 점대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소비자들은 **비우량** 이자율을 적용 받습니다.

FICO 점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퍼센트에 근거하여 부여됩니다.

지불 기록	35%
부채 금액	30%
신용 기록 기간	15%
신규 신용	10%
사용한 신용의 종류	10%

신용 점수가 표시된 신용 보고서는 전국적인 **신용 평가 기관**들로부터 \$8-\$15 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다른 상품들(신용 감시 서비스 등)은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 점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tc.gov/bcp/conline/edcams/credit/coninfo_reports.htm 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Credit Reports(신용 보고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www.myfico.com 에서 “Understanding Your FICO Score(FICO 점수에 대한 이해)” 를 읽어보십시오.

D

Deadbeat – 데드비트: 전통적인 속어에서는 데드비트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 기관 사이에서는 데드비트가 매월 계좌 잔액을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여 이자나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고객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데드비트 계좌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Bankrate.com 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2005 년에 이러한 거래 수수료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서 \$300 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Debt Management Plan (DMP)/Debt Settlement Plan (DSP) – 부채 관리 계획(DMP)/부채 청산 계획(DSP):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적절한 부채 관리 계획(DMP)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MP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신용 상담 기관에 합의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상담 기관은 입금된 금액으로 이 기관이 소비자 및 신용 제공 기관과 함께 작성한 스케줄에 따라 신용 제공 기관에 부채를 상환합니다. DMP 를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36-60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채 청산 계획 (DSP)에서는 신용 상담 기관이 신용 제공 기관과 일시 청산 금액을 협상합니다. 소비자가 신용 상담 기관에 합의된 금액을 입금하면 이 기관이 그 금액을 신용 제공 기관으로 이체하여 부채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인국(DOC)이 면허한 프로레이터가 캘리포니아 주민을 상대로 DMP 와 DSP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DMP 와 DSP 사업은 면허 취득이 면제되고 채무자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동의한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OC 웹사이트 www.corp.ca.gov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Credit Counselor/Debt Negotiator/Credit Repair** 를 참조하십시오.

Debt Negotiator – 부채 협상 기관: Credit Counselor/Debt Negotiator/Credit Repair 를 참조하십시오.

Default – 불이행: “불이행”이란 신용카드 계약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불이행은 지불을 늦게 하는 것입니다. 지불을 늦게 하면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이자율을 인상하고 연체료(\$29-\$39 또는 그 이상)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약서를 읽고 신용카드 발급 기관의 규정을 알아두어야 불이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지불금을 특정한 주소에서 정오 이전에 수령해야 하고, 미국 달러로 표시된 단일 수표를 발행해야 하고, 지불 쿠폰을 동봉할 것을 요구합니다. (**Universal Default** 참조)

Defective Product – 결함 상품: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고급 가정용 카푸치노 메이커를 구입했으나 한 달 후에 고장이 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푸치노 메이커를 가까이 있는 커피 제품 전문점에서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카푸치노 메이커를 수리 또는 교체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는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대한 지불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카푸치노 메이커에 대해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된 금융 수수료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대금 지불을 보류한다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www.dca.ca.gov/legal/cr_7.pdf 에 게시된 소비자업무부의 법률 안내서 CR 7, 신용카드에 대한 지불 보류 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또한, www.dca.ca.gov/legal/cr_8.pdf 에 게시된 법률 안내서 CR 8, 신용카드 청구 오류

정정 방법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웹사이트 <http://ag.ca.gov/consumers/>를 참조하십시오.

E

Equifax, Experian: Credit Bureau 를 참조하십시오.

F

Federal Reserve Board (FRB)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Complaints Against Credit Card Issuers 및 Shopping for Credit Cards 를 참조하십시오.

Fees – 수수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계약서에는 연회비, 최소 금융 부과금, 현금 서비스 수수료, 연체료, 한도 초과 수수료, 전화 지불 수수료와 같은 여러 종류의 수수료와 부과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2005 년에 연회비, 현금 서비스 수수료, 벌칙금만으로 \$160 억 이상의 수입을 얻었습니다(그 해의 이자 수입은 \$710 억 이상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이러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에 가입하기 전에 신청서나 가입권유서에 들어있는 공개 내용을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미 신용카드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약서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과 부과 조건을 확인하여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 하버드 법대 교수는 1 월에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이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속임수와 함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고객들은... 기한 내에 지불을 못하여 불이행 이자율과 벌칙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초 신용카드 계약서에 이자율 및 수수료로부터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속임수와 함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속임수와 함정은 매우 많지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보편적 불이행[**Universal Default** 참조], 불이행 이자율, 연체료, 한도 초과 수수료, 전화 지불 수수료, 청구서 지불 만기일의 반복적인 변경, 수표를 발송할 장소의 변경, 지불 총액을 찾기 어렵도록 청구서를 작성, 수표 도착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표 접수 센터의 이동, 유예 기간에 대한 고객의 오해 유도[**Grace Period** 참조], 이중 주기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Elizabeth Warren 교수, 상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에서의 증언, 2007 년 1 월 25 일)

Finance Charge – 금융 부과금: 금융 부과금이란 신용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달러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대한 **미지불 잔액과 연간 이자율(APR)**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신용카드 계좌의 미지불 잔액에 APR 을 적용하여 매월 금융 부과금을 계산합니다. 미지불 잔액에는 구입 대금, 전월에서 이월된 미지불 잔액, 거래 부과금과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APR 은 12.9 퍼센트이고 전월의 미지불 잔액은 \$1,202.38 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미지불 잔액에 APR 의 12 분의 1 을 곱하여 금월의 금융 부과금을 계산합니다($\$1,202.38 \times 1.0926\% = \13.14). \$24($\$1,202.38 \times .02 = \24)의 **최소 지불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중 \$13.14 로는 금월의 금융 부과금을 지불하고 \$10.86 은 미지불 잔액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실제 금융 부과금이 매우 소액이더라도 **최소 금융 부과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G

Grace Period – 유예 기간: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명세서 날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불하면 **금융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 날짜로부터 25 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전액 지불하면 이전 명세서의 잔액을 지불 기일까지 완전히 지불한 경우 금융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허용하는 유예 기간은 보통 신규 구입에만 적용되고 현금 서비스와 잔액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이자는 보통 즉시 발생합니다. 전월에서 이월된 잔액을 일부라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유예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예를 들면, 25 일에서 20 일로), 유예 기간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I

Interest Rates – 이자율: 연방 대법원은 국법은행이 그 은행이 설립된 주에서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른 주(이자율 상한선이 있는 주 포함)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arquette National Bank 대 First Omaha Service Corp. (1978 년) 439 US 299). 이러한 판결을 내린 후에 Citibank 와 같은 주요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사우스 다코타와 같은 이자율 상한선이나 **고리 금지법**이 없는 주로 본사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증가하자, 일부 주는 신용카드 발급 기관을 유지 또는 유치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인상 또는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고 현재는 이자율이 신용카드 발급 기관과 고객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데는 위와 유사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국법은행이 그 은행이 설립된 주에서 연체료에 적용하는 이자율 한도(또는 무한도)를 다른 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Smiley 대 Citibank (South Dakota) (1996년) 517 US 735). 따라서, 연체료 한도가 없는 주에 설립된 은행은 고객의 주에서 법으로 규정한 한도에 상관없이 그 은행이 임의로 결정한 연체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L

Late Payment Fee – 연체료: 연체료란 가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불을 하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Fees** 를 참조하십시오.

Liability – 책임: 신용카드를 분실한 가입자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이를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가입자가 승인하지 않은 카드 사용에 대해 가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카드를 훔친 사람이 가입자가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지불 책임이 있는 최대 금액은 \$50 입니다. 어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이 \$50 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ATM 카드와 직불카드(debit card)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카드에 대한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 –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분실 신고를 한 경우
- \$50 – 분실 사실을 안 후 2 영업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500 – 2 영업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했으나, 은행이 미승인 인출 항목이 표시된 명세서를 우송 또는 전송한 후 60 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 무제한 – 은행이 미승인 인출 항목이 표시된 명세서를 우송 또는 전송한 후 60 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적시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ATM 카드와 직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업무부의 법률 안내서 CR 6, 전자 자금 이체(EFT)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Consumer Bill of Rights in Electronic Fund Transfers)를 참조하십시오.

Loss Protection – 손해 보호: 많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보험은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해 부과한 수수료를 보상합니다. (**Liability** 참조) 많은 신용카드는 미승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합니다.

인터넷, 전화, TV, 잡지를 통해서 광고하는 손해 보호 보험은 보통 비용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험업자들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모든 미승인 사용에 대해 가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M

Merchant Fee –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거래 수수료라고도 함)란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신용카드 거래의 처리에 대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Bankrate.com 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2005 년에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서 \$300 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Minimum Finance Charge – 최소 금융 부과금: 최소 금융 부과금이란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청구 주기 동안에 부과하는 최소 또는 고정 금융 부과금을 말하며, 실제 금융 부과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금융 부과금이 \$1 인 경우, 실제 금융 부과금 이 \$.35 에 불과하더라도 \$1 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과금은 보통 잔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Fees** 참조)

Minimum Payment – 최소 지불금: 최소 지불금이란 신용카드 계좌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매월 지불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보통 미지불 잔액의 2 퍼센트를 최소 지불금으로 요구하나, 적게는 1 퍼센트에서 많게는 4 퍼센트까지 요구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미지불 잔액이 \$2,500 이고 2 퍼센트의 최소 지불금만을 지불하는 경우, 이 잔액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30 년 3 개월이 걸리고, 총비용은 \$7,733.49 가 소요됩니다(APR 을 17 퍼센트라고 가정하는 경우).

N

Negative Option – 네거티브 옵션: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판매업자들은 임의로, 그리고; 소비자의 요청이 없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조건적인 증여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법률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잡지를 1 년 동안 구독하고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 잡지를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제의하는 전단이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잡지에 흥미가 있는 소비자는 이러한 제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1 년의 기간이 끝나고 구독을 갱신하지 않았으나 신용카드 명세서에 다음 해의 구독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와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구독료를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는

이러한 부과금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Cancellation of Recurring Charges** 참조)

이른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 플랜에는 CD와 DVD 클럽, 북 클럽, 헬스 클럽 회원권, 신용 감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플랜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하면 계속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플랜에서는, 특히 신용카드 계좌에 자동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경우, 빠져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CD 1 장을 정가로 구입하면 다른 CD 1 장을 무료로 주는 플랜과 같은 “사전 통지 네거티브 옵션 플랜”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플랜에서는 구입 대상 상품을 설명하는 광고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소비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상품을 거절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반송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을 자동으로 배달합니다. www.ftc.gov/bcp/online/pubs/products/negative.shtm에 게시된 “Prenotification Negative Option Plans(사전 통지 네거티브 옵션 플랜)”를 읽으십시오. 네거티브 옵션 플랜에서 빠져 나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http://ag.ca.gov/consumers/>)과 FTC(www.ftc.gov)로 연락하십시오.

O

Opt Out/Opt In – 선택적 거부/허락: 새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 선택(Important Privacy Choices for Consumers)”이나 이와 유사한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이 통지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통지서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개인 재정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 정보가 모든 개인 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재정 정보에는 융자금 또는 신용카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계좌 잔액, 지불 기록, 당좌 대월 기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개인 재정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비자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신용카드 발급 기관, 은행, 신용조합, 저축대부조합, 보험회사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용자 브로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사, 부동산 평가사와 같은 다른 재정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개인 재정 정보를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외부 회사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이러한 개인 재정 정보의 공개를 허락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개인 재정 정보를 그러한 외부 회사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개인 재정 정보를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회사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재정 정보의 사용을 방지하려면 금융기관에 그러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재정 정보 공개를 거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개인 재정 정보를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회사에 임의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개인 재정 정보를 그 금융기관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회사("계열사"라고 함)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신용도" 정보) 중 일부를 계열사에 공개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정보에는 지불 기록과 신용 점수가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 통지서를 받으면 "계열사에 제공하는 신용 정보"와 같은 항목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어떤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이 개인 정보를 계열사 및 외부 회사에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신용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오퍼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의 공개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 선택" 양식을 사용하여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본인이 선택한 항목에 표시한 후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미리 수신 주소를 기재한 반신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이메일이나 무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면 위의 양식을 작성하여 우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은 개인 정보 통지서를 매년 보내지만, 이러한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거부 결정을 바꿀 때까지 계속 그러한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거부할 권리를 계속 보유하므로 언제든지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청(Office of Privacy Protection)의 웹사이트 www.privacy.ca.gov 또는 Privacy Rights Clearinghouse의 웹사이트 www.privacyrights.org를 방문하십시오.

사전 승인된 신용카드 오퍼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Prescreening** 참조하십시오.

Outstanding Balance – 미지불 잔액: 금융 부과금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미지불 잔액에 **연간 이자율 (APR)**을 적용하여 그 달의 금융 부과금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몇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미지불 잔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일 평균 잔액"이라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정 잔액" 또는 "이전 잔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일 평균 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청구 주기 동안 매일의 잔액을 더한 다음 청구 주기 일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청구 주기 동안 수령한 지불금을 감액하여 일일 금액을 구합니다. 플랜에 따라 신규 구입을 계산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발급 기관들은 2 주기 일일 평균 잔액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발급 기관들이 금월과 전월의 일일 평균 잔액을 사용하여 금월의 금융 부과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 주기 방법을 사용하면 보통 금융 부과금이 더 많아집니다.

Over Limit Fee – 한도 초과 수수료: 한도 초과 수수료란 신용카드 계좌의 신용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Fees** 참조)

P

Prescreening – 사전 선별: 우편으로 받는 새 사전 승인 신용카드에 대한 오퍼는 “사전 선별”이라는 과정의 결과로 제공됩니다. 사전 선별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신용 제공 기관이 최저 신용 점수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신용 평가 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 제공 기관은 그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신용에 대한 오퍼를 제공하고, 보통 나중에 신용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새로 신용카드에 가입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전 선별 오퍼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퍼를 받으면 가입 가능한 신용카드의 종류를 확인하고 카드의 조건과 특성을 비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오퍼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급적 우편물을 적게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원절도범이 사전 승인된 오퍼를 도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신용을 제공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사전 선별을 싫어합니다.

신용에 대한 사전 선별 오퍼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전 선별을 영구적으로 또는 5년 동안 거부할 수 있습니다. 3개 주요 신용 평가 기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888) OPTOUT 또는 (888) 567-8688의 무료전화와 웹사이트(www.optoutprescreen.com)를 개설했습니다.

Privacy – 개인 정보: Opt Out/Opt In 을 참조하십시오.

R

Regulation Z – Z 규정: 이 규정은 연방법인 **공정용자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신용 제공 기관들에게 다른 요건 중에서 특히 신용 거래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Z 규정”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 있으나, 이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신용 제공 기관이

사용하는 양식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Solicitations** 의 예 참조). Z 규정은 연방 규정집 제 12 편, 226 부에 들어 있습니다.

Revolving Credit – 회전 신용: 신용카드는 회전 신용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회전 신용이란 소비자가 용자 기관이 정한 신용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신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사용 가능한 신용 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러한 금액을 지불하면 사용 가능한 신용 금액이 원래 금액으로 “회전”하여 되돌아 갑니다.

회전 신용은 자동차 용자나 주택 용자 같이 분할 상환하는 용자와 다릅니다. 분할 상환 용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차입합니다. 차입자는 용자금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의 월 지불 금액과 지불 횟수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회전 신용에는 신용 한도를 사용하는 당좌대월 보호와 주택 순가치 신용 한도 등이 있습니다.

Rewards Cards – 보상카드: 보상카드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몇 가지 종류의 보상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일부 직불카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현금 환불, 단골 고객 비행 마일(frequent flier miles), 상품권, 호텔 및 렌터카 요금 할인, 대학 학비 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모든 신용카드 오퍼의 55 퍼센트 이상이 특정한 종류의 보상을 제공하며, 85 퍼센트의 가구가 보상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현재 약 80 퍼센트의 보상카드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주요한 예외는 항공사 카드입니다).

다른 모든 신용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상카드 프로그램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작은 글자로 인쇄된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Risk-Based Pricing Notice – 위험 기준 가격 통지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받았을 때 공개 항목에 이자율이 29.9 퍼센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봉투에는 “위험 기준 가격 통지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목의 통지서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 기준하여,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유리한 조건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신용업계에서는 많은 신용 제공 기관들이 위험에 기준한 가격 모델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신용 조건을 제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는 **신용 보고서**에 들어있는 정보 때문에 비교적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에는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에 문제가 있어 많은 수의 다른 고객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험 기준 가격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사용하여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불리한 조건을 오퍼하는 원인을 제공한 문제점을 찾아보십시오.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면 발급 기관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신용 보고서 가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적용 받은 고객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S

Secured Credit Card – 담보부 신용카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행인 경우가 많음)이 소유한 저축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에 담보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담보부”라고 하는 이유는 은행이 계좌를 동결하고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여 미지불 잔액을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부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보통 저축 계좌에 지불하는 이자율보다 높으며, 신청 및 처리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 손상되었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담보부 신용카드가 신용을 복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이에 대해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매월 기한 내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많은 담보부 신용카드는 상품 구입 장소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카드 가입에 동의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부 신용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consumer-action.org 에 있는 Consumer Action(소비자 행동)의 간행물 보관소를 방문하십시오.

Subprime Credit Card 를 참조하십시오.

Shopping for a Credit Card – 신용카드 시장 조사: 단지 우편을 통해서 배달되는 신용카드 오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특성을 가진 카드를 찾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신용카드에 대한 유용한 일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은행들이 발급한 136 개의 카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신용카드 리스트를 6 개월마다 갱신하므로 개별 카드의 특정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웹사이트는 여전히 신용카드 선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좋은 소스입니다: www.federalreserve.gov/pubs/shop/survey.htm.

Solicitation – 가입권유서: 연방법인 **공정용자법**은 모든 신용카드 가입권유서와 신청서에 이자율과 계약 조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아래의 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입에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APR)	06/11/1 까지 2.9% 그 후에는 14.9%
기타 APR	현금 서비스 APR: 15.9% 잔액 이체 APR: 15.9% 벌칙 이자율: 23.9%.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변동 이자율 정보	구입 거래에 대한 APR 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이자율은 매월 우대 금리에 5.9%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구입 잔액 상환 유예 기간	평균 25 일
구입 잔액 계산 방법	일일 평균 잔액 (신규 구입 제외)

연회비	없음
최소 금융 부과금	\$.50
현금 서비스 거래 수수료: 현금 서비스 금액의 3% 잔액 이체 수수료: 잔액 이체 금액의 3% 연체료: \$25 신용 한도 초과 수수료: \$25	
* 벌칙금에 대한 설명. 지불금이 6 개월 동안 2 회 10 일 이상 늦게 도착하면 벌칙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APR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대 금리는 전월 10 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 이자율입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 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다른 신용카드의 공개 내용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청구된 금액을 매월 전액 지불하는 경우에는 연회비가 없고 유예 기간이 긴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잔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APR 이 낮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이자율, 유예 기간, 미지불 잔액, 연회비, 최소 금융 부과금, 현금 서비스 수수료, 잔액 이체 수수료, 한도 초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의 해당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ubprime – 비우량: 용자 기관들은 서로 다른 신용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우량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해서 FICO 신용 점수가 620 점 미만이면 비우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620-850 점은 우량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자 기관이나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비우량 이자율을 오퍼하나, 소비자가 우대 금리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수는 몇 점이고 왜 우대 금리에 대한 자격이 없는지 문의하십시오.

Subprime Card – 비우량 신용카드: 비우량 신용카드는 보통 신용이 매우 불량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이러한 카드는 보통 매우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가 비쌉니다. 예를 들면, 비우량 신용카드의 신용 한도가 \$350 이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70-\$80 의 신용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우량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 Bankrate.com 과 Consumer Action 은 그 대신에 **담보부 신용카드**를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담보부 신용카드도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T

Transfer fee – 이체: Balance Transfer Fee 를 참조하십시오.

TransUnion: Credit Bureau 를 참조하십시오.

Truth in Lending Act – 공정용자법: 공정용자법은 소비자 신용 거래의 금융 항목 공개 내용을 표준화합니다. 이 법과 Z 규정은 소비자들이 신용 시장에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용 비용에 대해 정확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 제공 기관은 소비자들이 신용 비용을 비교하고 부채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부과금** 과 **연간 이자율(APR)**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신용 조건에 대한 광고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발급과 사용을 통제하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연방 법전 제 15 편 1601 – 1666j 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U

Universal Default – 보편적 불이행: 신용카드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당 기관은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시장 상황, 사업 전략에 근거하여, 또는 이유를 불문하고, APR 과 수수료를 포함하는 모든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 불이행” 조항의 예입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다른 신용 제공 기관의 채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신용카드의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보통 고객의 신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다른 신용 제공 기관(공익 사업체, 자동차 용자 회사, 백화점 등)에 연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신용카드의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2 배 또는 3 배까지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소비자가 다른 신용 제공 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급 기관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인상을 정당화합니다.

finance.yahoo.com 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기관의 거의 40 퍼센트가 보편적 불이행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7 년 3 월에 은행의 신용 관행에 대한 의회의 청문회가 열린 후, 최소한 1 개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기관이 이러한 관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ees 및 Default 를 참조하십시오.

Usury – 고리: 고리란 용자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은 용자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하나, 주 은행 및 국법은행, 주 저축대부조합, 그리고 주 및 연방 신용조합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이러한 한도를 면제합니다. 또한 연방 저축대부조합, 외국은행, 개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된 이자율 한도를 면제합니다.

Interest Rates 를 참조하십시오.

Z

Zero Balance –무잔액: 무잔액이란 신용카드 부채를 전액 상환했고 새로운 부과금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Zero Percent Interest – 영 퍼센트 이자율: 영 퍼센트 이자율이란 이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과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관은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자율이 영 퍼센트인 신용카드를 오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퍼는 다른 신용카드의 잔액을 이체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 퍼센트 이자율은 6-9 개월 동안 제공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상 이자율(아마도 15 퍼센트 이상)로 환원됩니다.

영 퍼센트 이자율은 매력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사전 승인된 영 퍼센트 이자율 오퍼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수령한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Prescreening** 참조).
- 구입에 대해서는 정상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잔액 이체 또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체된 잔액을 무이자 기간 동안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늦게 지불하는 경우, 무이자 신용카드와 다른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Universal Default** 참조).

CONSUMER CONNECTION

2007 년 7 월